

공기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분석결과서

의뢰날짜	2015. 2. 26	의뢰항목	공기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현장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철거공사[5공구]		
시료수량	9개	채취일시	2015. 2. 26
시료번호	B-01 ~ 09	채취자	정 동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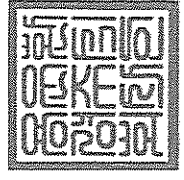
시료번호	시료위치	유 량 (L/min)	채기시간 (min)	유효면적 (mm ²)	공기 체취량(l)	시료 섬유수 (개/mm ³)	시야수	공시료 (개/mm ³)	계수면적	단위 면적당 밀도	공기중 농도 (fiber/cc)	판정
B-01	부지경계선-1	16	150	385	2400	31	100	1	0.00785	38.22	0.006	노출기준미만
B-02	부지경계선-2	16	150	385	2400	33	100	1	0.00785	40.76	0.007	노출기준미만
B-03	부지경계선-3	16	150	385	2400	25	100	1	0.00785	30.57	0.005	노출기준미만
B-04	부지경계선-4	16	150	385	2400	35	100	1	0.00785	43.31	0.007	노출기준미만
B-05	음압기 배출구	16	30	385	480	8	100	1	0.00785	8.92	0.007	노출기준미만
B-06	위생실비 입구	16	30	385	480	9	100	1	0.00785	10.19	0.008	노출기준미만
B-07	폐기물 반출구	16	30	385	480	8	100	1	0.00785	8.92	0.007	노출기준미만
B-08	폐기물 보관소-1	16	30	385	480	6	100	1	0.00785	6.37	0.005	노출기준미만
B-09	폐기물 보관소-2	16	30	385	480	7	100	1	0.00785	7.64	0.006	노출기준미만

* 노출기준 : 0.01 fiber/cc

* 분석방법 : PCM, Phase Contrast Microscope 위상차 현미경법
* 본 보고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기관의 허가 없이 재발행 될 수 없음.

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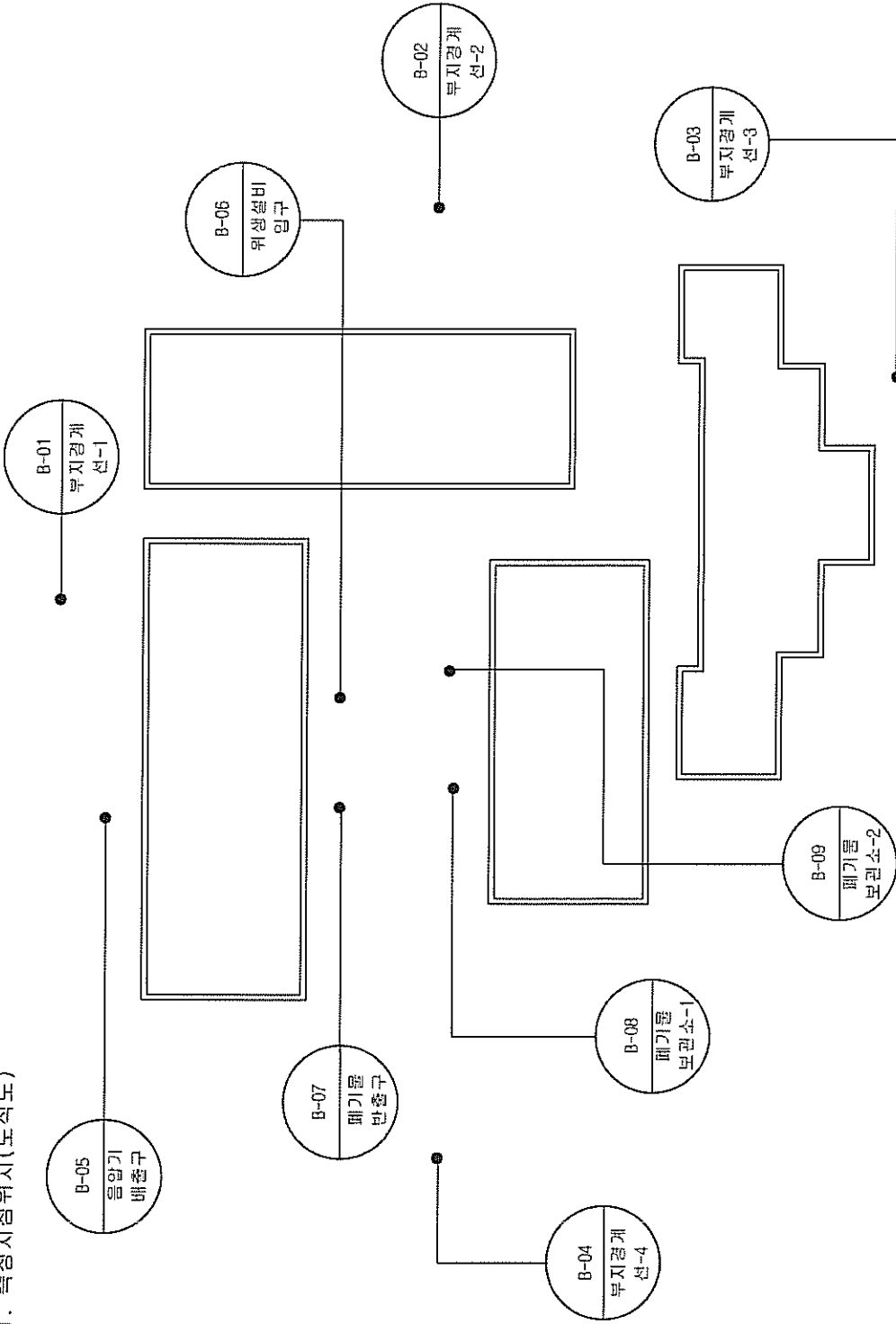
분석일자 : 2015. 02. 27
분석자 : 김 나 경



용 운 환 경 (주)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6 M.G.빌딩 4F
TEL : 02-836-6097 ~ 8 FAX : 02-834-6095 http://www.석면조사.org

별첨 III. 측정지점위치(도식도)



<p>비선 농도 측정 인식표</p>	<p>시료번호 측정구역</p>
-------------------------	----------------------

- 조사명 : 석면 해체 제거 시업장 석면 비선농도 측정
- 건축물명 : 공장
- 측정위치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배출구, 폐기물반출구, 폐기물보관소
- 건축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20-3번지
- 도면번호 : 01
- 식별조사기관 : 흥원환경(주)
- 식별분석기관 : 흥원환경(주)
- 측정일자 : 2015. 2. 26
- 총 구분 : 지상 1층

지상 1층	B-01-09	측정 위치	측정유량	기준이허
		부지경계선 (4point)	2400L	기준이허
음압기배출구 (1point)	480L			
위생설비 입구 (1point), 폐기물반출구 (1point) 폐기물보관소 (2point)				
시료번호		기준소과여부		

(별첨)

IV.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노동부)

제2014-120023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변경)

기관명	용운환경주식회사	
소재지	(156-8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 (대방동, 엠지아이빌딩) ()	
대표자성명	박승민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 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할 지역 대행(지정) 한 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 지역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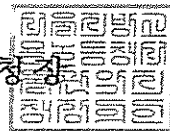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4. 11.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공기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분석결과서

의뢰날짜	2015. 2. 23	의뢰항목	공기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현장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물철거공사[5공구]		
시료수량	11개	채취일시	2015. 2. 23
시료번호	B-01 ~ 11	채취자	정 동 인

시료번호	시료위치	유 량 (L/min)	채취시간 (min)	유효여과 면적 (㎡)	공기 채취량(l)	시트 섬유수 (개/㎡)	증 서마수	공시료 (개/㎡)	계수면적	단위 면적당 밀도	공기중 농도 (fiber/cc)	판정
B-01	부지경계선-1	16	150	385	2400	34	100	1	0.00785	42.04	0.007	노출기준미만
B-02	부지경계선-2	16	150	385	2400	35	100	1	0.00785	43.31	0.007	노출기준미만
B-03	부지경계선-3	16	150	385	2400	27	100	1	0.00785	33.12	0.005	노출기준미만
B-04	부지경계선-4	16	150	385	2400	31	100	1	0.00785	38.22	0.006	노출기준미만
B-05	작업장 실외	16	75	385	1200	17	100	1	0.00785	20.38	0.007	노출기준미만
B-06	위생설비 입구	16	30	385	480	8	100	1	0.00785	8.92	0.007	노출기준미만
B-07	거주자 주거구역-1	16	75	385	1200	15	100	1	0.00785	17.83	0.006	노출기준미만
B-08	거주자 주거구역-2	16	75	385	1200	13	100	1	0.00785	15.29	0.005	노출기준미만
B-09	폐기물 반출구	16	30	385	480	9	100	1	0.00785	10.19	0.008	노출기준미만
B-10	폐기물 보관소-1	16	30	385	480	7	100	1	0.00785	7.64	0.006	노출기준미만
B-11	폐기물 보관소-2	16	30	385	480	8	100	1	0.00785	8.92	0.007	노출기준미만

* 노출기준 : 0.01 fiber/cc

* 분석방법 : PCM, Phase Contrast Microscope 위상차 현미경법

* 본 보고서는 법적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기관의 허가 없이 재발행 될 수 없음.

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분석일자 : 2015. 02. 24

분석자 : 김 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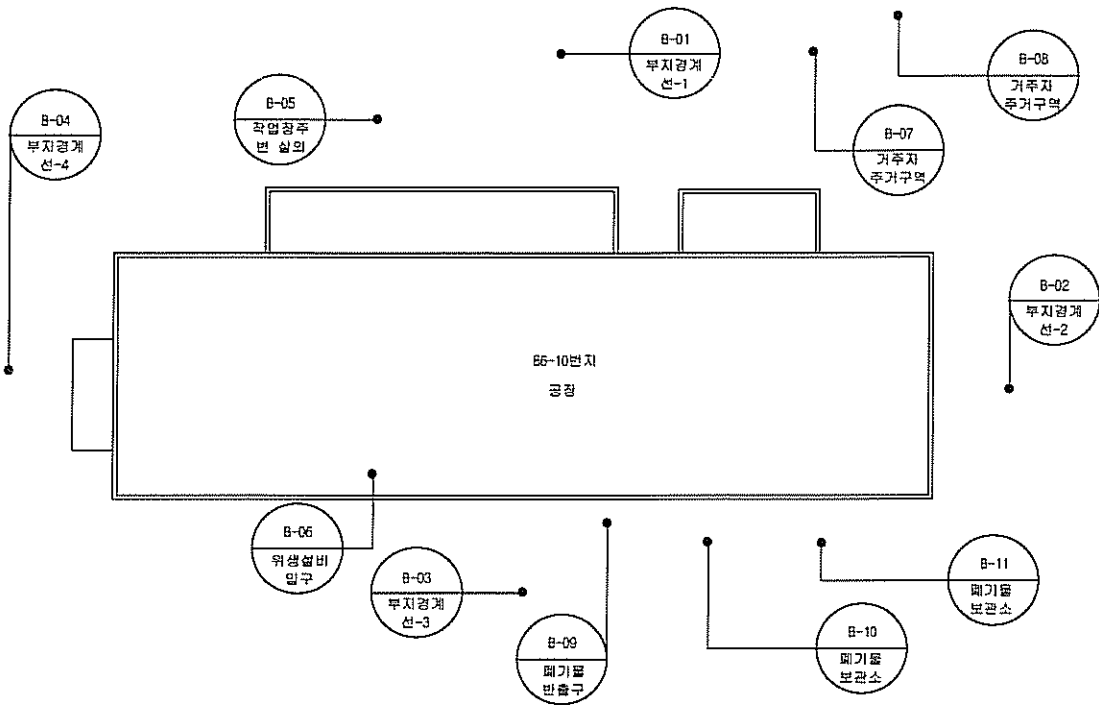


용 윤 환 경 (주)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6 M.G.I빌딩 4F
TEL : 02-836-6097-8 FAX : 02-834-6095 http://www.석면조사.org

별첨III. 측정지점위치(도식도)



비산 농도 측정 인식표

시료번호

측정구역

측정구역

- 조사명 : 석면 여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농도 측정
- 건축물명 : 공장
- 측정위치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주변시설,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보관소, 거주자 주거구역
- 건축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6-10번지
- 도면번호 : 01
- 석면조사기관 : 용원환경(주)
- 석면분석기관 : 용원환경(주)
- 측정일자 : 2015. 2. 23
- 층 구분 : 지상 1층

	시료번호	측정 위치	채취유량	기준초과여부
지상 1층	B-01~11	부지경계선(4point)	2400L	기준이하
		작업장주변 시설(1point), 거주자 주거구역(2point)	1200L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반출구(1point)	460L	
		폐기물 보관소(2point)		

(별첨)

IV.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노동부)

제2014-120023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변경)

기관명	용운환경주식회사	
소재지	(156-811) 서울특별시 등각구 상도로 16 (대방동, 엠지아이빌딩) ()	
대표자성명	박승민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할지역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 지역	전국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4. 11.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